

2018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2차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기술·경력·네트워크를 보유한 숙련 중·장년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매칭하는 세대융합형 (예비)창업팀을 발굴하여 초기창업 쏠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2018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에 참여할 (예비)창업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창업분야 세대융합형 (예비)창업팀(이하 '창업팀')을 대상으로 창업 사업화자금부터 초기창업 쏠단계를 집중 지원하여 유망 세대융합형 창업기업으로 육성

□ 모집분야

- 청년 1인이상과 중·장년 1인이상이 팀 구성을 완료한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기업(최대 1억원 지원)

* (중·장년) 만 40세 이상('78.7.3 이전 출생자) 의 경력 10년이상 숙련자
(청년) 만 39세 이하('78.7.2일 이후 출생자)의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갖고 협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선정규모 : 40팀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8.8.3(금) 17:00)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 권역별 주관기관은 '18.7.18(수) 이후 공고예정이며, '18.7.25(수) 이후 선택가능

□ 참가자격 : ①을 충족하는 창업팀으로 ② 또는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세대융합형 창업팀(중·장년-청년) 구성이 완료되어 사업종료 2개월 이전까지 아래 팀빌딩 유형중 1개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자

* (중·장년) 만 40세 이상('78.7.3 이전 출생자) 의 경력 10년이상 숙련자

☞ 중장년의 경력인정범위

가.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나. 해당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다.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기술사·기능장 등)

☞ 재직중인 중장년의 경우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퇴직(사업자를 보유할 경우 휴폐업) 또는 휴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후 1년이상 휴직이 가능할 경우에는 참여 가능

* 단, 중장년이 교수직인 경우 아래 조건에 따라 겸직 허용

- 전임교수 : 교내 기본시수 이내의 비보직 교수(모든 출강 시수 합산기준)

- 비전임교수 : 한학기 총 9시간이내 강의시수(모든 출강 시수 합산기준)

** (청년) 만 39세 이하('78.7.2일 이후 출생자)의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갖고 협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세대융합 팀빌딩 유형》

구 분	내 용
지분공유형	· 법인사업등록시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입하고 지분보유 * 중장년 투자의 경우 자금+역량이 함께 투입
공동명의형	·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완료한 경우
핵심멤버형	· 타 세대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지분제공(스톡옵션 5%이상)형태로 연봉 계약 체결
기타유형**	· 시장의 다양한 수요 반영을 위해 평가위원이 공동창업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와 시너지창출을 충분히 기대할수 있는 유형

* 기타유형은 주관기관의 '자율선택권'에 의해 선정되는 창업팀에 한함

②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 ☞ 세대융합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 (대표자 변경 불가)
- ☞ 대표자 포함* 세대융합 팀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 대표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도 해당대표 모두 해당

- ☞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협약종료 2개월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대표자가 되고, 팀원은 ①항의 팀빌딩 유형의 조건을 1가지 이상 충족하도록 하여야 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동 사업에 신청가능

③ '3년 이내(2015년 7월 2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개인, 법인)의 대표자'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업력 판단

- ☞ 2인이상의 대표자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대표자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2015년 7월 2일 이전인 (공고일 기준 창업 3년초과)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창업인정 여부 결정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 ** 다수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고일('18.7.2) 이전에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완료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 (예비창업자 불가)

①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 기존 기업* (개인, 법인)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 폐업 기업 포함
-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②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 기존 기업* (개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 폐업 기업 포함
-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이전에 해당**
-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8.8.3)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8.8.3)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자** (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고 2] 참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본사업 협약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3)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동 사업에 신청가능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세대융합팀원 전원이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지원 내용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비고																						
사업화 자금	<p>☞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약 7개월 내외)</p> <p>* 선정 시,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p> <p>** (2년차 후속지원) '19년 창업팀 중 우수창업팀(기관별 2~3팀)을 선발하여 '19년에 최대 3천만원 추가지원</p> <p>☞ 총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팀 부담금 30% 이상</p> <p style="text-align: center;">< 총 사업비 구성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정부지원금</th> <th colspan="2">창업팀 부담금</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head> <tbody> <tr> <td>총 사업비의 70% 이하</td> <td>총 사업비의 10% 이상</td> <td>총 사업비의 20% 이하</td> </tr> </tbody> </table> <p>* (현물) (예비)창업팀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p> <p>**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참고 3]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 사업비 구성 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총사업비</th> <th rowspan="2">정부지원금</th> <th colspan="2">창업팀 부담금</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head> <tbody> <tr> <td>10,000만원</td> <td>7,000만원</td> <td>1,000만원</td> <td>2,000만원</td> </tr> <tr> <td>100%</td> <td>70%</td> <td>10%</td> <td>20%</td> </tr> </tbody> </table>	정부지원금	창업팀 부담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팀 부담금		현금	현물	10,000만원	7,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100%	70%	10%	20%	정부지원금은 평균 65백만원 내외 (최대 1억원)
정부지원금	창업팀 부담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팀 부담금																						
		현금	현물																					
10,000만원	7,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100%	70%	10%	20%																					
교육 및 멘토링	☞ 주관기관별 선정된 창업팀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인프라	<p>☞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 (주관기관별 인프라 상이)</p> <p>* 사무공간은 선정된 창업팀에 한하여 주관기관이 보유한 공간 규모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p>	-																						
성장 프로그램	<p>☞ 글로벌진출지원, 투자유치, 소비자반응조사 등</p> <p>* 세부 성장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상이</p>	일부 프로그램은 선별적 지원																						

□ 지원 기간 : 협약 후 약 7개월 내외(~'19.3.31)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 사업비 구성(100%) : 정부지원금(70% 이하) + 창업자 대응자금(30% 이상)

** 창업자 대응자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예비창업팀은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팀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과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창업팀원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

- 2018년 7월 25일 (수) ~ 8월 3일 (금), 17:00까지

< 신청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17시까지 최종 단계인 '제출완료' 상태가 되어야 하고, 17시 이후 접수 불가
- ② 'SC평가정보'에 개인 또는 기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 실명등록' 또는 '기업 실명등록'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신청이 불가하오니 사전확인 필요
 - (온라인 등록) http://www.siren24.com/mysiren/customer/sir_g0201_01.jsp
 - (전화문의) 1577-1006 (2번 누르고 다시 2번 누르면 상담원 연결)
-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반환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희망하는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신청 종료 일시 이후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 시스템 클릭 → ④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舊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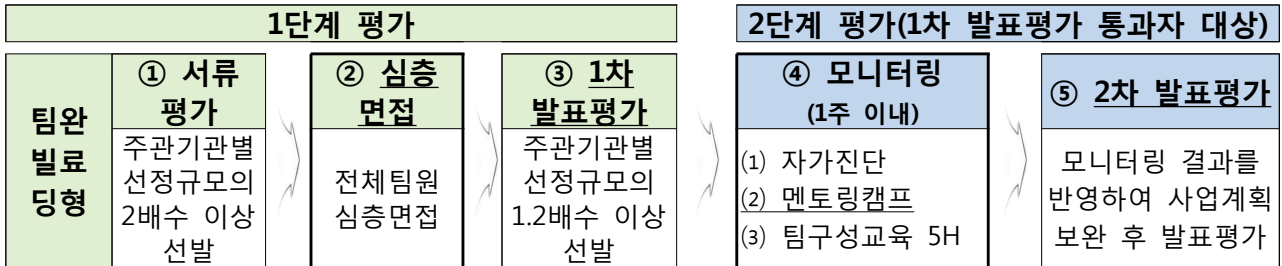
**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창업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선정평가

※ 아이템이 [참고 5] 4차산업 혁명 업종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선정시 우대될 수 있음

1) 팀빌딩완료형

< 창업팀 선정평가 절차 >



* '② 심층면접 ⇒ ③ 1차 발표평가 ⇒ ④-(2) 멘토링캠프 ⇒ ⑤ 2차 발표평가' 소과정은 예비창업자(팀) 본인(대표), 창업기업 대표,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팀원 전원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

** 평가 장소 및 일정 등은 주관기관별 상이

① 서류평가 : 창업아이템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시장진입 전략, 창업자의 역량 등을 평가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건은 제외, 다수의 지재권도 0.5점 한건으로만 인정)	각 0.5점 최대 2점	최대 5점
○ 최근 3년 이내(15.7.1이후)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행자부, 국토부, 중기부 주관)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주관) 본선 진출 - 지식재산(IP) 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 최근 3년 이내(15.7.1이후) 창조경제타운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15.7.1이후) 특허청 IP 디딤돌나래사업 수혜자		
○ 최근 3년 이내(15.7.1이후)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 기술창업교육(창업 강좌, 창업아카데미 등) 이수자 * 온라인 창업교육(창업에듀 등) 이수자 제외, 총 30시간 이상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기술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1점	
○ 내일채움공제 가입실적	1명당1점	
○ 최근 3년 이내(15.7.1이후)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입주·졸업기업	각 1점 최대 2점	
○ 최근 3년 이내(15.7.1이후) 시니어 기술창업스쿨(17~18년 시니어 기술창업 센터에서 시행한 실전창업교육과정) 수료생		
○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자인 경우 가산점 부여	2점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팀원의 가점 서류 모두 인정

② **심층면접** : 세대융합형 창업팀원 전원에 대해 팀빌딩적절성, 창업 의지, 인성, 신청자격(재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심층면접시 창업팀은 팀빌딩 요건 기본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자격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수(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주관기관 배포)

③ **1차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차별성, 시장성, 팀원구성의 우수성 등을 평가

-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10분 이내 발표 평가

* 1차 발표평가 대상자는 주관기관별 안내 예정

** 팀빌딩완료형의 경우 세대융합으로 구성된 팀원 전원 참석하여 각자 수행영역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대응 필수

④ **모니터링** : 1주간 입소형 교육(5H)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3일 이내의 멘토링캠프를 통해 사업계획 보완을 위한 멘토링실시

* 멘토링캠프 내 교육시간을 편성하여하여 동시진행 가능

- **(입소형 교육)** 성공적인 팀빌딩을 위한 동업·협업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지분, 스톡옵션 설정 등), 팀원간 소통전략 등 교육참여

- **(멘토링 캠프)** 비즈니스모델, 해외진출전략 등 멘토링캠프를(3일 이내, 필수 이수) 참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⑤ **2차 발표평가** : 사업 추진의지,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성장 가능성, 시장성, 팀빌딩의 우수성 등을 평가

- 멘토링 결과 등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별도의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평가

□ **최종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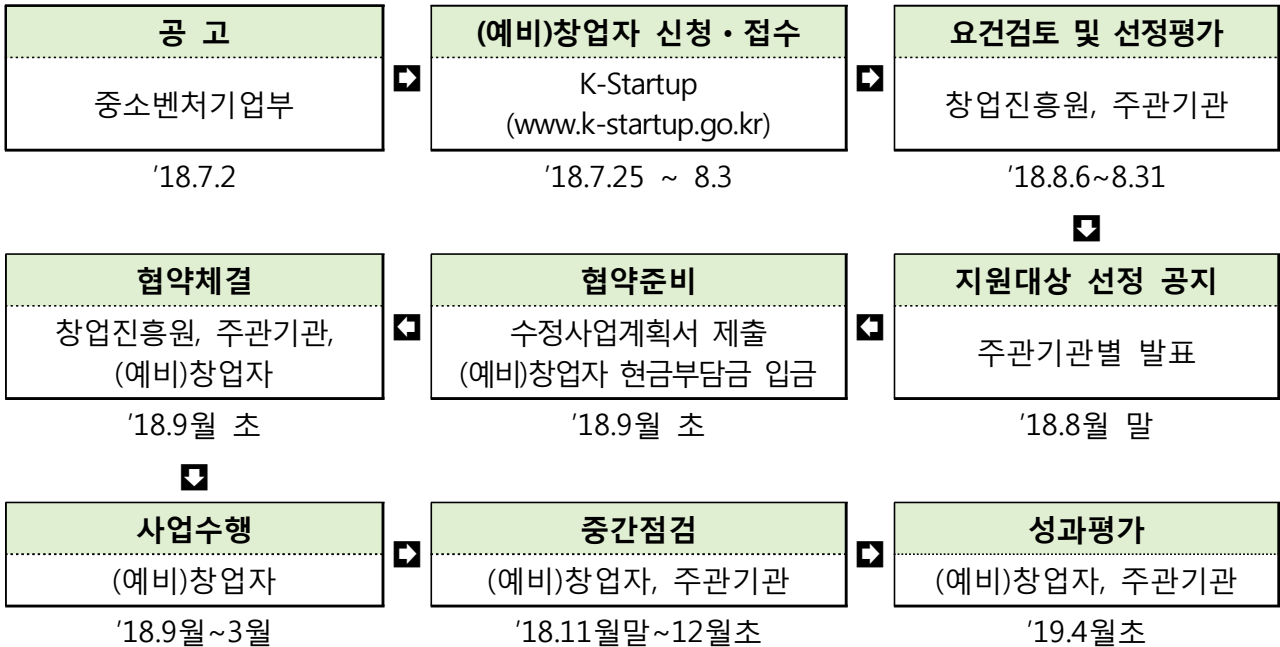
○ 주관기관별 창업팀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선정자 및 최종 선정자별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평균 70백만원 내외)하고 지원금의 일부는 중간평가이후 20%이내 우수창업팀에 대해 추가지급 예정

** 주관기관은 기관별 선정규모의 최대 30% 이내(투자비율에 따라)에서 자율적으로 최종 선정자를 선정 가능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선정된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팀원 전원이 '신청(지원) 제외 대상'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선정 완료 후 세대융합팀원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고 2] 참조

- 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 '시니어 창업기업 마케팅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 간 일부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타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평가 중 유의사항

- 쏠 평가 과정에 예비창업자(팀) 본인(대표), 창업기업 대표,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팀원 전원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
 - 1차 발표평가 시,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팀원이 각각 수행역할 부분에 대하여 분리하여 발표
- 서류·발표 평가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지급되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8

기타 참고사항

□ 사업설명회

- 일시 : 2018년 7월 17일 (화) 14:00
- 장소 : 서울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르호봇 비즈니스인큐베이터 블록큐브)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울촌빌딩 4층
 - * [참고5] 오시는길 참조

□ 사업 신청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내선 3번)
- 사업문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온라인 상담(Quick Menu - 상담하기)

-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4.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5. 4차 산업혁명 분류
 6. 통합설명회 오시는길

- 【붙임】**
1. 2018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신청서
(세대융합 팀빌딩 추가작성 사항 및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융합팀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서 필수제출)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기창업자 해당, '18.1.1 기준)

□ **창업여부 기준**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개인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창 업
A법인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창 업
A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창 업
A법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으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다시 A명으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으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다시 A명으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업종추가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창업업력 기준**

- 업력 3년을 초과한 사업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기준일자 이전 타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새롭게 창업하는 업종의 업력을 적용

Q. 2010년부터 개인사업자로 도매업을 운영 중이던 홍길동씨는 2018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모집 공고일 이전 제조업을 영위하기 하기 위하여 2017년 신규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경우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에 신청 가능한가?

A. 가능
(창업여부) '18.1.1 이전 이종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으로 인정
(창업업력) 제조업의 업력 1년이 기준

【참고 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09년 ~ '18년 (지원(신청) 제외 대상사업)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글로벌 창업기업 발굴·육성프로그램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 **글로벌엑셀러레이팅 활성화**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스마트벤처캠퍼스(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2,3단계)**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인턴제 (사업화)**
-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재도전성공패키지)**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집중육성)**
- **스마트창업터사업(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18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최초선정 된 사업과 협약체결이 원칙임

** 선정이후 사업진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참고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은 신청 허용)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4】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협약체결일 이후 신규채용 인건비에 한하며, 신규인력이 채용될 경우 신규인력 1인당, 기존인력 1인의 인건비 50% 지원가능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참고 5】

4차 산업혁명 분류

전략분야	기술개발 테마	전략분야	기술개발 테마
AI/ 빅데이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인식 SW · 영상처리 시스템 · 인공지능 플랫폼 · 인지과학 SW · 빅데이터 기반 SW · Cloud Brokering · Cloud service · 가상화/컨테이너 	스마트 가전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코 프로젝터 · 스마트 미러 · 에어가전 · 스마트 콘센트 및 플러그 · 스마트 비서 · 융·복합형 정수기 · 스마트키친 디바이스 · 고효율 난방기기
5G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단거리 무선통신부품 · 5G 무선전송 및 접속 기술 · 5G 프론트홀·백홀 기술 · 5G 코어 네트워크 기술 · massive MCT 기술 · 무선 접속을 위한 RRH 기술 · 고속 이동체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제공 기술 	로봇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친화형 협동로봇 · 착용형 근력증강 웨어러블 로봇 · 산업용 부상방지 및 작업지원 로봇 · 물류 로봇, 가전 로봇 · 스포츠 시뮬레이터 로봇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 소셜 로봇 플랫폼 및 서비스
정보보호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체인증 · 클라우드 보안 · 사물 인터넷 보안 · 모바일 보안 · 스마트 산업제어시스템(ICS) 보안 · 지능형 자동차 보안 · 지능형 보안위협 대응 · 블록체인/블록체인 기반 보안 · 지능형 영상보안 	미래형 자동차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용 편의시스템 · 자율주행차량용 카메라 · 정보제공 시스템 · 자율주행자량의 Lidar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 친환경 경량화 부품 · 전력변환 시스템 · 전기구동 시스템 · 에너지 저장/관리 시스템
지능형 센서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학부품 및 기기 · 반도체 검사장비 · 반도체 공정장비 · 반도체 패키징 소재 · 전력반도체소자 · 고주파 반도체 · SoC 부품 · 반도체 센서, 반도체 화학 소재 	스마트 공장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제조 애플리케이션 · 센서 및 화상처리 기술 · 스마트 제조 CPS · 제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 스마트 제조 AR/VR · 3D 프린팅 제조 시스템 · 산업용 고신뢰/저전력 네트워크 · 스마트공장 플랫폼
AR/ VR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VR 응용 서비스 플랫폼 · 실사 기반 AR/VR 영상 입력 장치 · 과업 특화형 개인 AR/VR 디스플레이 도구 · AR/VR 서비스용 콘텐츠 · AR/VR 오감 인터랙션 시스템 · 공간형 AR/VR 디스플레이 솔루션 · AR/VR 콘텐츠 제작용 소프트웨어 	바이오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체분석 및 정보 분석 · 바이오칩 · 분자진단, 면역화학진단 · 웰빙 전통식품 ·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 기능성 화장품, 아토피개선 화장품 · 부착형 화장품
웨어러블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시계·밴드 · 스마트 신발, 스마트 의류, 스마트패치 · 생활약자보조 착용기기 · 실감·체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 레이저·스포츠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 휴대용 생체인증기기·시스템 	스마트홈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밀착형 스마트디바이스 ·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 · 스마트 통합형 홈 네트워크 연동기술 · 홈/빌딩 지능형 공간 서비스 · 지능형 HEMS
물류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로봇·드론 관제시스템 · 소형지게차 기술 · 스마트 화물이동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 스마트 패키징 시스템 · 배송물류 라우팅 지원시스템 · 스마트 물류창고 	에너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 물질처리 소재 및 공정 · 수처리 공정 전처리 설비 ·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및 재사용 설비 · 연료전지용 M-BOP · xEMS 시스템 ·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 시스템 · 폐열에너지 활용 시스템 · 제조업 부생가스 재활용 ·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 초고용량 커패시터, 이차전지 전해질 · 건물 일체형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 태양광 발전시스템, 태양광 공정장비 · 소형풍력발전기
안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서형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 안전사고 대응 지능형 모니터링시스템 · 지능형 화재안전 대응 시스템 · 유해물질 유동 모니터링 시스템 ·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 범죄 대응 시스템 		

【참고 6】

통합설명회 오시는 길

□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블록큐브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율촌빌딩 4층



구분	노선안내
주변 지하철역	5호선(여의도), 9호선(여의도), 5호선(여의나루) · 1호선 서울역 → 9호선 노량진역 → 여의도역 하차
버스 노선	서울역에서 오시는길 · 간선버스 503(서울역버스환승센터) → 여의도지하차도입구 정류장 하차 · 지선버스 7016(서울역버스환승센터) → 지선버스 5012(원효대교북단) → 한국거래소.구증권선물거래소 정류장 하차 · 간선버스 162(서울역버스환승센터) → 유진투자증권.파이낸셜뉴스신문 정류장 하차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